

제184회 임시회

2001. 2. 13

교육사회위원회

檢 討 報 告 書

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안

教育社會委員會 專門委員

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보고

2001. 2. 13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안 : 2001년 2월 1일 제출
- 회부 : 2001년 2월 2일

3. 제안이유

- 학교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단위학교별 자율적·교육적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학생이 보호되고 교원이 존중되는 학교건설로
-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·조정·권고(안 제2조)
 -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부모간에 발생한 분쟁
 -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
 - 교권보호·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사항
-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의무(안 제3조)
- 분쟁조정 신청 및 결과처리(안 제6조 내지 제7조)
- 위원의 제척, 심의등 결과처리(안 제8조 내지 제9조)
- 교육청의 지원(안 제11조)
 - 교육감 및 교육장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원
 -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한 사항에 대한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함.

5. 검토의견

-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학부모간의 분쟁, 학생안전사고로 발생하는 보상문제, 교권보호 및 존중에 관한 사안을 심의·조정·권고하여

- 학교별 분쟁사안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학생의 보호와, 교권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